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11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	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안은 2024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

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은 임금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발주 포함)하는 경우 그 도급인(발주자 포함)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되,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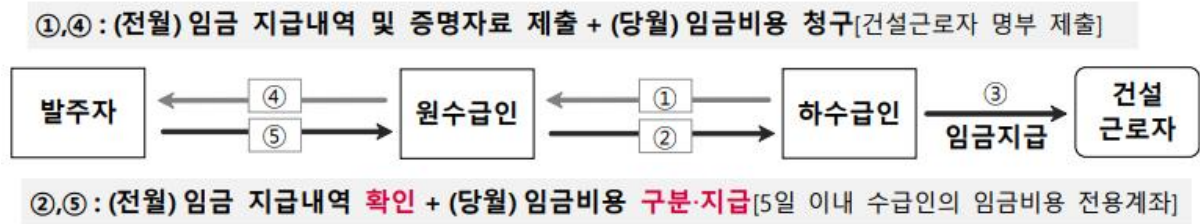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그림] 임금구분지급 및 확인제 흐름도



이와 같은 임금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공사 도급인(발주자 포함)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공사비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 시행규칙 제5조²⁾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에 대하여 수급인이 임금지급내역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임금지급과 관련한 사항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 ③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 임금의 미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어렵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건설근로자는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 권
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등에 관
한 사항에 관한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
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을 보장하고 체불·유용을 방지하며 도급
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³⁾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제9조의2제1항⁴⁾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
하고, 수급인은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
하여야 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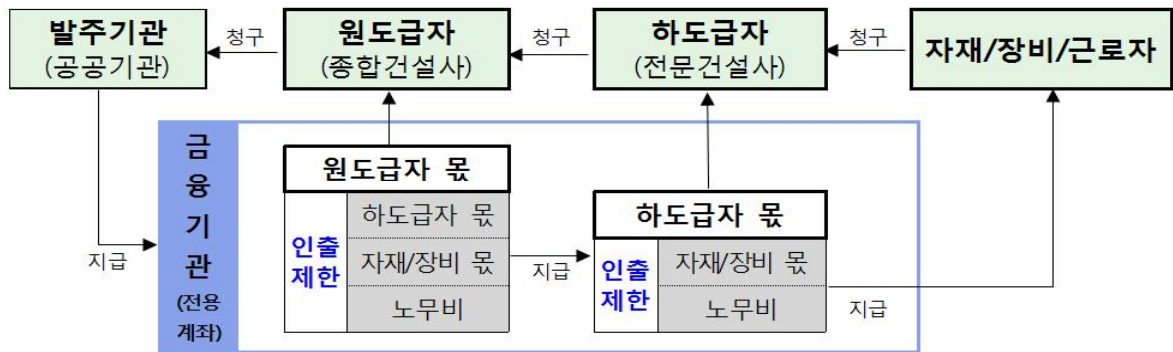
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발췌)

-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개요】



* 위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운영절차는 시스템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즉, 현행 제도 하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구분지급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금구분지급 및 확인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분석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임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 내역 확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건설근로자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5)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⁶⁾

고용노동부는 임금비용의 지급 여부 등을 건설근로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시스템 외 별도의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우려
가 있고, 임금비용 정보 등 발주자와 도급인 및 수급인 간 계약 관련
사항을 건설근로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특정 시스템의 구축 여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
하여야⁷⁾ 할 사항으로,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재량규정으
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5)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안전 점검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
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35

참고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관련 현행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소관)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조달청, 기획재정부 소관)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소관)

2-8.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사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관리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